
AI관리규정

주관부서	정보보호	분류번호	Ⅱ
개정번호	1.0	시행일자	2026. 8. 13

2026. 8

소유권

본 문서의 저작권은 SK스퀘어주식회사가 소유한다.

주관 부서장의 서면 허락 없이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분류번호	-	정보보호 AI관리규정	제정일자	'26. 8. 13
페이지	2 / 9		개정번호	1.0

제·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페이지 및 내용	개정일자

분류번호	-	정보보호	제정일자	'26. 8. 13
페이지	3 / 9	AI관리규정	개정번호	1.0

제1장 총칙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정의)..... 4

제3조 (적용 범위) 5

제2장 기본원칙.....5

제4조 (데이터 프라이버시 존중) 5

제5조 (사이버보안)..... 5

제6조 (편향성 방지)..... 6

제7조 (생성 콘텐츠의 식별 가능성 보장) 6

제8조 (시스템의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6

제9조 (AI 감독 및 개입)..... 6

제10조 (AI 활용에 대한 책임체계)..... 7

제11조 (사용 범위 및 가이드라인)..... 7

제12조 (금지되는 AI 활용)..... 7

제3장 현황 및 결과 공시.....7

제13조 (현황 및 결과 공시) 7

부 칙8

분류번호	-	정보보호	제정일자	'26. 8. 13
페이지	4 / 9	AI관리규정	개정번호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SK스퀘어(주) (이하 “회사”라 함)가 AI 기술의 발전이 기업 경영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OECD AI 원칙(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UNESCO AI 윤리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U 인공지능법(EU AI Act) 등 AI 관련 국제 규범을 지지하며, 경영활동 전반에서 AI를 책임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수반되는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AI(인공지능)"란 인간의 지각, 학습, 추론, 자연어 처리, 문제 해결 등 지적 활동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통해 인공적으로 구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장치 체계를 말한다.
- "사이버 위협"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국가·사회적 인프라 또는 개인의 정보 자산에 무단 접근, 파괴, 변조, 유출, 기능 마비 등의 피해를 입히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적대적인 일체의 공격 또는 유해 행위를 말한다.
- "이용자"란 AI 시스템을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EU 인공지능법(EU AI Act)"이란 유럽연합(EU)이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Regulation (EU) 2024/168)을 말한다.
- "AI 시스템"이란 AI 를 활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예측, 추천, 분류, 생성, 의사결정 지원 등 특정 목적의 결과를 산출하는 소프트웨어, 모델, 서비스, 도구 또는 이와 결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 "AI 결과물"이란 AI 시스템이 생성하거나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가공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코드, 분석 결과 등 일체의 산출물을 말한다.

분류번호	-	정보보호 AI관리규정	제정일자	'26. 8. 13
페이지	5 / 9		개정번호	1.0

7. "사회적 점수(Social Scoring)"란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적 행동, 사회적 신뢰도, 신념, 법적 의무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데이터를 장기간 수집·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이나 평판을 등급화하거나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체계를 말한다.
8.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Real-time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이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단말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해 인간의 생체적·행동적 특징 데이터(안면, 지문, 홍채, 걸음걸이 등)를 원격으로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함으로써 대상자의 인지 없이 실시간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확인하는 기술 또는 시스템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AI 시스템의 자체 개발, 외부 도입 · 활용, 제3자 대상 AI 시스템 제공 등 모든 형태의 AI 관련 활동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 관하여 적용되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적용된다.

제2장 기본 원칙

제4조 (데이터 프라이버시 존중)

회사는 AI 시스템의 활용 및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 폐기 등 생애주기 전반에서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며, AI 시스템이 개인정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

회사는 AI 시스템의 활용 및 개발 과정에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

분류번호	-	정보보호 AI관리규정	제정일자	'26. 8. 13
페이지	6 / 9		개정번호	1.0

안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회사는 AI 시스템 및 회사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조작,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암호화, 접근 통제, 보안 모니터링 등 기술적 보안 조치를 시행하며,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6조 (편향성 방지)

회사는 AI 시스템의 활용 및 개발에 있어 잠재적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습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내재할 수 있는 편향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점검을 수행하며, AI 시스템이 특정 집단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7조 (AI 결과물의 식별 가능성 보장)

회사는 이용자가 AI 결과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AI 시스템이 생성하여 작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의 AI 결과물에 대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며,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 및 안내 조치를 시행한다.

제8조 (시스템의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회사는 AI 활용 목적, 한계, 데이터 출처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AI를 활용한 업무의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회사는 AI 기반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가 이용자·이해관계자의 필요와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AI 결과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한다.

제9조 (AI 감독 및 개입)

회사는 사람 중심의 AI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람의 권리·안전·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는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유지한다. AI 시스템이 산출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재정의·수정·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보장한다.

분류번호	-	정보보호 AI관리규정	제정일자	'26. 8. 13
페이지	7 / 9		개정번호	1.0

제10조 (AI 활용에 대한 책임체계)

회사는 AI 시스템의 도입, 운영 및 AI 결과물에 대해 명확한 책임체계를 운영한다. AI 활용 영역별로 책임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AI 시스템에 기인한 오류, 사고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구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도록 한다.

제11조 (사용 범위 및 가이드라인)

회사는 임직원의 AI 활용이 회사의 정보보호 원칙 및 윤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AI 사용의 허용 범위, 금지 사항 및 사용 절차를 별도의 「생성형 AI Tool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관리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사용이 허용된 AI 시스템, 사용 시 준수사항, 금지 행위, 데이터 입력 기준 등을 포함하며,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검토·갱신하도록 한다.

제12조 (금지되는 AI 활용)

회사는 EU 인공지능법(EU AI Act)이 금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도입·활용하지 않는다. 이는 잠재의식적·조작적·기만적 기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행동을 왜곡하는 AI 시스템, 연령·장애·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하는 AI 시스템, 사회적 행동·개인 특성에 기반한 사회적 점수(Social Scoring)를 제공하는 AI 시스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Real-time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제3장 현황 및 결과 공시

제13조 (현황 및 결과 공시)

분류번호	-	정보보호 AI관리규정	제정일자	'26. 8. 13
페이지	8 / 9		개정번호	1.0

회사는 AI 보안 등 현안 이슈 및 개선 방안을 주요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한다. 이후, 승인된 보고자료는 AI 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관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본 정책의 이행 현황 및 주요 활동 성과를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공시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